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9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이수진・최기상・남인순

박홍배 · 김정호 · 한정애

김현정 · 김 윤 · 송옥주

민형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 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,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,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 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제9 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	제17조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		
관) ① (생 략)	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	②		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9.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		
	리 및 지원		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